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2. 23 선고 2020가단194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2. 23.

주 문

1.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7. 20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0. 7. 20. 접수 제19932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허윤범

별지